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세칙

감사실 청렴감사부

제정 2015.10.30. 세칙 제 73호
개정 2016.12.28. 세칙 제100호
개정 2023.12.18. 세칙 제220호
(상임이사·지원·지원장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계약직 운영세칙 등 6개 세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세칙)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감사규정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2.28.>

제2조(고발대상) 고발대상은 임직원(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직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범죄행위 당시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공직자윤리법」,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, 「정관」 및 제규정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일반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. <개정 2016.12.28.>

제3조(범죄보고 및 고발주체) ① 각 부서(실·단·센터 및 본부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발대상 사건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「감사규정」 제47조에 준하여 상임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8., 2023.12.18.>

② 원장 또는 상임감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34조제2항 및 이 세칙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8.>

제4조(고발여부의 결정) ① 원장 또는 상임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행

위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8.>

1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
2.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(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)
3. 200만원 미만이더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
4. 최근 3년 이내 금품 또는 향응의 수수, 공금횡령·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
5. 인사,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문서를 위조·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
6. 직무관련자(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)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경우
7.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
8.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, 수사할 때에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9.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
10.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범죄에 관련된 경우
   가. 인·허가, 승인,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
   나. 연구비 집행 관련 업무
   다. 각종 수납관련 업무
11. 그 밖에 범죄의 횟수,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의 범죄행위에 임직원이 아닌 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뿐만 아니라 관련자(퇴직자,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다)도 고발조치하여야 한다.

제5조(고발시기 및 절차) ① 고발시기는 직무관련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한다.

②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.

③ 고발은 원장 또는 상임감사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8.>

④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하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고발처리상황 관리) 각 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한 사유를 원장 또는 상임감사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8.>

제7조(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) 원장은 소속 직원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2015.10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탁금지법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제1호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6.12.28.>

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12.18.>

(상임이사·지원·지원장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계약직 운영세칙 등 6개 세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세칙)

이 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고발대상 사건 보고

건명	
사건개요 및 발견경위	
피해액	
관련자 (소속부서 및 성명)	
증거서류	※ 증빙자료 첨부

「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세칙」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(부서장) (인)

[별지 제2호서식]

고 발 처 리 상 황 부

번호	인적사항				고발일자	고발접수처	범죄사실 요지	수사기관(경찰,검찰)		법원	
	범죄혐의 당시 소속	고발 당시 소속	직위(직급)	성명 생년월일				일자	처분 내용	판결일자	판결내용